

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82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8. 27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4. 08. 27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4. 09. 10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)

가. 제안이유

-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·공동체 육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위탁근거

-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(공동육아나눔터)
-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)
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-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)

다. 위탁내용

1) 위탁 대상: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

2) 위탁 기간: 2025. 1. 1. ~ 2029. 12. 31.(5년)

3) 선정 방법: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

- 신청 자격: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를 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

-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

-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

- 비영리법인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 단체

※ 공고 2회까지 고성군 소재 법인의 신청 및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3회차 부터 신청자격을 경상남도로 확대함

4) 위탁사무내용

-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

5) 소요예산: 56,712천원 정도(2024년 공동육아나눔터 내시 기준)

라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

1)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- 수요자(보호자)의 욕구 및 선호도가 다양하여 민간주도의 전문성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진행등의 유연한 대처 필요
- 민간 위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양육 공동체 기반 조성 필요

2)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- 행정 주도의 서비스 공공성보다 민간의 다양성, 전문성 및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며, 위탁단체의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) 경제적 효율성,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

- 해당 사무는 비영리사무로 양육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

4)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-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와 보호자를 위하여 공공성과 안정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동시에, 특색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시설관리가 요구됨.
- 따라서 민간의 전문단체 위탁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다양성이 기대됨.

5) 성과 측정의 용이성

- 서비스 이용률, 예산의 집행률,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 성과측성 용이

6)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-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은 사회복지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금의 정산, 예·결산 정보공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

마. 위탁사유: 민간의 전문성, 운영의 안정성, 프로그램 활성화 제고

바. 기대효과

- 1) 민간 전문업체 선정·운영으로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육 프로그램 제공
- 2) 지역내 민간단체 선정을 통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제고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와 부모·아이가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기대

사. 추진일정

- 1) 민간위탁 공고 및 접수 : 2024. 10.
- 2)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: 2024. 11.
- 3) 수탁기관선정 : 2024. 11.
- 4) 협약체결 : 2024. 11.
- 5) 운영을 위한 기타 제반준비 : 2024. 12.
- 6) 위탁운영 : 2025. 1.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혜정)

- 2024. 12월 준공예정인 고성군 가족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- 동의안 내용 검토
 -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
 -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의 전문성, 안정성, 프로그램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 및 「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위탁 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함.
 -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
 - 위탁 기간을 2025. 1. 1. ~ 2029. 12. 31.(5년)로 한 것은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14조제2항과 관련하여 적정함.

-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정성

-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.

- 위탁사업비의 적정성

- 위탁사업비 56,712천 원은 2024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침에서 정한 내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적정함.

-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,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